

# 「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8월 29일

나. 발 의 자: 김근한 · 강승수 · 김낙관 · 김민성 · 김원섭 · 김재우 ·  
김정도 · 김춘남 · 박교상 · 소진혁 · 신용하 · 양진오 ·  
이상호 · 이지연 · 장미경 · 정지원 · 추은희 의원 (17명)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9월 7일

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우리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상호 상생관계를 유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1사1경로당 정의 규정(제2조제7호)
-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신설(제15조의2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부서검토: 노인장애인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노인과 지역사회 간 상호 상생관계를 맺음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를 제공하여 우리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과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로당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사업 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가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.
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1사1경로당 추진 시 기업체에서 지원할수 있는 부분과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